

관세환급제도의 현황

- 한국은행 국제수지과 -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에 관세를 징수하였다가 수출이행시점에서 이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인데, 1975년 들어 우리나라는 종래 수출용수입 관세사전면세제에서 수출용수입 관세 환급제도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제도변경에 따른 수출업자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예외조치로서 일부 품목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관세징수를 유예하여 주는 관세징수 유예제도 및 관세납부액과 관세환급액을 상계처리하는 關稅相計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여 왔는데, 금년 들어서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더불어 관세상계 및 관세징수유예의 수혜폭을 대폭 축소 조정하였다. 즉 금년 3월에 들어서는 關稅相計대상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6월에는 기업규모별 및 지역별로 관세징수유예기간을 단축 조정하였으며, 이어 10월에는 이를 더욱 단축시킬 예정으로 있다.

이와 같은 관세환급 예외조치적용의 축소로 금년 1~7월중 관세환급실적은 1조 486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48.3% 증가하였으며, 수출 1달러당 관세환급액도 3.5원 확대된 41.6원으로 늘어났다.

1. 관세환급제도의 개요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시에 징수하였던 관세를 수출이행시에 환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7월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이 제도가 처음 채택되었다.

관세환급은 대부분이 개별 원자재별로 관세납부액을 일일이 산출하여 이를 수출이행시에 환급하여 주는 개별환급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별환급방법은 관세환급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환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물품별 관세환급비율을 사전에 산정

해 놓고 해당물품이 수출되었을 경우에 환급률표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정액환급제를 확대 실시하였다. 정액환급의 대상품목은 수출업체의 신청에 의해 관세청장이 업체별로 지정하게 되는데 副資材만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副材料 정액환급)도 있고 업체에 따라서는 主資材 및 副資材를 모두 환급 대상으로 지정(완전정액 환급[일명 主材料定額還給])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정부는 관세환급제도의 채택으로 인해 수출제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부터 대응수출 이행시까지 발생하는 자금부담의 완화를 위해 수출면장의 제출시에 전년도 환급실적을 감안하여 업체의 신청액중 최고 90%를 환급하고 3개월후에 이를 정산하는 개산환급제를 도입하는 한편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관세징수를 유예하여 주거나(이하 관세징수유예제도) 일정자격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 수입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수출이행시에 관세환급액과 관세부과액을 상계하고 남은 잔여분만을 납부하는 상계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여 왔다.

2. 최근의 변경사항

정부는 관세환급제도의 도입 당시 선징수 후환급에 따르는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실시되었던 관세징수유예 등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왔는데 특히 금년 들어서는 경상수지 흑자지속과 더불어 이를 더욱 축소 조정하였다.

먼저 관세징수유예제도를 살펴보면 금년들어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대기업과 중소기업(중견수출기업 포함)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관세징수유예기간을 단축 조정하였다. 즉 6월 1일 대기업에 대해 종래 2개월 이상 관세징수유예를 받던 품목의 징수유예기간을 1개월씩 단축하는 한편 무역불균형이 심화된 지역(관세청 고시로 공고)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개월을 더 단축(단축전 징수

유예기간이 1개월인 경우 제외, 이하 동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불균형 심화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만 1개월을 단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1개월씩 단축하기로 하는 한편 무역불균형 심화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개월을 더 단축시킬 예정으로 있다.

〈表-1〉 徵收猶豫期間 調整 內容

(單位：個月)

조 정 전	1 단계 (6.1 시행)		2 단계 (10.1 시행예정)	
	大企業	中小·中堅수출기업	大企業	中小·中堅수출기업
4	3(2)	4(3)	2(1)	3(2)
3	2(1)	3(2)	1(1)	2(1)
2	2(1)	2(1)	1(1)	1(1)
1	1(1)	1(1)	1(1)	1(1)

〈註〉 () 안은 무역역조가 심한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수입시 징수유예기간

한편 종전의 相計制度下에서는 과거 3년간 계속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은 수입한 원재료를 가공하여 이를 직접 수출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계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금년 3월부터는 수입한 原材料를 제조 가공한 후 이를 직접 수출하는 업체로 자격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상계 업체수가 1986년말 현재 158개에서 1987년 5월말 현재 130개로 축소되었다.

그 밖에 정부는 금년 7월에 들어 그동안 국산원자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세환급이 정지되거나 환급비율이 축소되었던 관세환급제한대상품목을 종전의 54개 품목에서 38개 품목으로 축소시켰는데, 주요 제한대상 품목은 마른고추, 가성소다, 탄산칼륨, 니트로벤젠, 무수프탈산 등 중소기업 固有業種品目과 농어민 소득증대 기여품목, 부품 및 소재 국산화대상품목 등이다.

또한 금년 10월부터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면장분할증명서로 납부세액증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부세액증명을 위해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내국신용장 등 국내거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에어서 이루어진 최근의 환급실적을 살펴보면 금년 1~7월중의 환급액은 1조 486 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48.3% 증가하였다. 또한 수출 1 달러당 관세환급액은 41.6원으로서 전년동기보다 3.5원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관세환급액의 증가는 수출 증가에 따라 관세환급대상액이 증가된 이외에 금년중 실시된 관세징수유예기간의 단축, 관세상계수혜 대상업체수 및 관세환급제한 대상품목수의 축소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은행·주간내외경제 1338호〉

〈表-2〉 關稅還給額¹⁾ 推移

	1986			1987		
	상반기	1~7月	연간	상반기	7月	1~7月
還 給 額 (A)	5,844.9	7,072.3	13,776.8	8,722.6	1,763.4	10,486.0
(억원)	(10.4)	(11.9)	(21.3)	(49.2)	(43.7)	(48.3)
定 額 환 급	681.6	764.8	1,449.9	770.9	171.3	942.2
個 別 환 급	5,163.3	6,307.5	12,326.9	7,951.7	1,592.1	9,543.8
수 출 액 (B)	156.4	185.7	347.2	209.7	42.3	252.0
(억달러)	(24.2)	(24.7)	(27.7)	(34.1)	(44.4)	(35.7)
輸 出 1 달 러 당 관 세 환 급 액 (원, A/B)	37.4	38.1	39.7	41.6	41.7	41.6

〈註〉 1) 부가가치세액 제외

2)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